붙임 2 | 공고문

태백시 공고 제2026-1337호

태백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4차 추가모집 공고

청년 고용을 촉진하여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「태백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」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4차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
2026. 11. 11.

태 백 시 장

1. 모집개요

❍ 모집기간: 2026. 11. 11.(수) ~ 11. 13.(금) / 3일간

❍ 지원내용: 지역 청년을 고용한 관내 사업장에 **청년 근로자 인건비(월 100만원) 및 교통비(월 10만원) 지원**

❍ 모집대상: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- 사업장: 공고일 기준 사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태백시 소재의 사업장
- 청 년: 공고일 기준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태백시인 청년

*「태백시 청년 기본 조례」제2조에 따른 청년: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

❍ 모집규모: 사업장 2개소 ※ 사업장별 청년 1명 지원

❍ 지원기간

구분	지원업체	지원기간
계	2개소	
2025년 사업	1개소	2026. 12. ~ 2027. 7.(8개월)
2026년 사업	1개소	2026. 11. ~ 2027. 12.(14개월)

❍ 업체 선정방법

- 사업장 2개소 선정 후 평가표에 따라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배정

※ 1순위: 2026년도 사업 14개월 지원 / 2순위: 2025년도 사업 8개월 지원

2. 지원 제외 대상 (1개라도 해당 시 지원 불가)

❍ 사업장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 ※ 「정부조직법」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,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육감,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
- 비영리법인
-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
- 국세·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
- 청년 근로자와 사업주가 4촌 이내 친족관계인 경우
- **최근 3년간(2023년~2025년)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(인건비 지원사업)에 참여한 경우**
- 단순 상담 및 접객·판매 등 일자리 제외
 (전화·방문고객 단순상담, 커피점·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(판매), 건설·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,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)
- **청년근로자의 1일 근로 시간이 8시간 미만, 주 40시간 미만(파트타임 및 단시간근무)인 경우**
- **청년근로자의 1일 근로 시간이 12시간 초과, 주 52시간 초과하는 경우**
- **청년 지급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**
- (향후제외) 지원 기간 중 사업장 휴·폐업 및 청년 중도포기 등 지원 제외사유가 발생할 경우(대체인력 지원 불가)

❍ 청년 근로자

- 청년 근로자와 사업주가 **4촌 이내 친족관계인** 경우
- 대학교 재학생, 휴학생은 신청 불가(단, 졸업예정자는 제외)
-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
- **지원 기간 동안** 태백시 거주 및 사업장에서 근무가 불가능한 자

3. 신청 및 접수

❍ 접수기간: 2026. 11. 11.(수) ~ 11. 13.(금) / 3일간

❍ 접수방법: **방문접수**

❍ 접 수 처: 태백시청 경제과(본관 3층) 청년정책팀(☎550-7292)

※ 근무시간(09:00~18:00) 내 접수, 중식시간(12:00~13:00) 및 공휴일 제외

4. 필수 제출서류 ※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유효

< 제출서류 >

① 사업 참여 신청서 1부.
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.
③ 법인인 경우 - 법인 등기부등본 1부, 법인 인감증명서 1부.
개인 사업자인 경우 -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,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.
④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.
⑤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1부. (조회 기간: 2026. 1. 1. ~ 접수일)
(단, 근로자 최초 고용 청년 사업주의 경우: 창업일~접수일)
⑥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. (조회 기간: 2026. 1. 1. ~ 접수일)
⑦ 근로계약서 1부.
⑧ 주민등록초본(사업주, 청년근로자) 각 1부. (접수일 기준 발급)
⑨ 사실증명(사업자등록사실여부) 1부. **※ 접수일 기준, 청년 근로자 기준으로 발급**
⑩ 가족관계증명서(사업주, 사업주의 배우자, 청년 근로자, 청년 근로자의 배우자) 각 3부.
※단, 가족관계증명서 없는 경우 **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으로** 제출

발급대상자 / 구분	사업주	사업주의 배우자	청년 근로자	청년 근로자의 배우자 (배우자 有 경우만)
발급 기준	본인 기준 1부 / 부·모 기준 각 1부			

※ (인감증명서,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사실증명 등)
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발급 가능(제적등본 제외)
⑪ (해당 시 제출) 고용 청년 증빙서류(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, 자립준비청년, 취업지원대상자,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) 각 1부.

5. 선정방법

❍ 심사일자: 2026. 11. 16.(월)
❍ 심사방법: 평가표에 의한 서류심사
❍ 평가항목

①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도
② 청년 근로자 지급 임금 수준
③ 청년 근로자 연령(사회 초년생 확인 여부)
④ 취업지원 대상자 채용 여부
⑤ 청년 사업주 해당 여부
⑥ (청년 사업주 해당 시) 창업 초기(5년 이내) 해당 여부
⑦ (청년 사업주 해당 시) 창업 후 근로자 최초 고용 여부

6. 선정결과 발표: 2026. 11. 18. (수) / 선정자 개별 통보

7. 기타사항

- ❍ 지원기간 중 제외대상에 해당하게 될 경우 **즉시 지원종료**
- ❍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,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제외 사유 등이 밝혀지면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하여, 즉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된 지원금 전액 회수(「지방보조금법」 제12조, 제31조) 및 청년일자리사업 전부 배제(「지방보조금법」 제32조)
- ❍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참여자의 책임이며, 고용 청년 증빙서류(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・차상위계층, 자립준비청년, 취업지원 대상자,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) 미비 시 해당사항 불인정